

의안번호	2207469
의 퇴 인	이주영의원
회 답 일	2025. 1. 17.
추 계 번호	24C0291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(미숙아등)에 대하여 통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매년 3억 3,000만원씩 총 16억 5,0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미숙아등의 통계관리 (안 제9조의3)	330	330	330	330	330	1,650	33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의3(미숙아등의 통계관리)	보건복지부장관은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및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,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·분석하고 관리(이하 “미숙아등 통계관리”라 한다)하여야 함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9조의3(미숙아등의 통계관리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른 미숙아등 통계관리 비용은 출산·보육 분야 유사 사례를 참고로 추계함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과 법률안 심사·의결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미숙아등에 대하여 통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(안 제9조의3)
 - (현행) 정부는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에 대하여 별도의 통계관리를 실시하지 않고, 지역별 보건소가 관련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음
 - －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하면 「모자보건법」 제8조제4항¹⁾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보고함
 - (개정안) 정부가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및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,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·분석하고 관리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－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미숙아등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 관리뿐만 아니라, 통계 및 정보 등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로 자료 수집·분석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1) 「모자보건법」 제8조(임산부의 신고 등) ④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□ 정부가 출산·보육 분야의 통계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사례로, 난임 관련 통계관리가 실시되고 있음

- 보건복지부는 “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통계시스템 구축·운영 위탁” 사업 (2025년도 예산 3억 3,000만원)을 통하여 난임 관련 통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

[표 2] 난임 관련 통계관리 사업 예산(2025년 예산 기준)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사업내용	예산액
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통계관리	· 난임시술의료기관 행정비용 보상: 212 · 난임시술의료기관 통계관리 등 운영비: 118	330

자료: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□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미숙아등에 대한 통계관리 비용으로, 연간 3억 3,000만원으로 추계됨

- 난임 관련 통계관리의 법적 근거가 되는 「모자보건법」 제11조의6²⁾의 내용을 개정안의 내용과 비교하면, 통계관리의 대상은 각각 난임과 미숙아등으로 상이하나, 실시주체가 보건복지부로 동일하고, 목적과 실시방법 등이 유사함

- 2) 「모자보건법」 제11조의6(통계관리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·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·분석하고 관리(이하 “통계관리”라 한다)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1. 인구통계학적 특성
 2. 산과 및 의학적 과거력
 3. 난임의 원인
 4. 난임시술의 과정 및 임신·출산 등 난임시술의 결과
 5.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의 건강 정보
 6.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정보
 7. 그 밖에 난임시술의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·운영할 수 있다.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난임환자를 진단·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그 밖에 난임극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·기관·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.
- ⑤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[표 3] 난임 관련 통계관리와 미숙아등 통계관리의 비교

구분	난임 관련 통계관리	미숙아등 통계관리(개정안)
근거 법률의 내용	· 실시주체: 보건복지부 · 목적: 난임극복 지원 · 실시방법: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·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·분석하고 관리하여야 함	· 실시주체: 보건복지부 · 목적: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및 치료 지원 · 실시방법: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,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·분석하고 관리하여야 함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미숙아등 통계관리를 현행 난임 관련 통계관리 수준으로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로 연간 3억 3,0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－ 난임 관련 통계관리를 위한 “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통계관리” 사업의 예산액이 2017년도에 3억 3,000만원으로 최초 편성된 이후 현재까지(2017~2025년도) 변동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또한 추계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
-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정부가 미숙아등에 대하여 통계관리를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소요비용으로,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매년 3억 3,000만원씩 총 16억 5,0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4] 미숙아등의 통계관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
미숙아등의 통계관리 (안 제9조의3)	330	330	330	330	330	1,65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